

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말소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즉시
장치사용자	성명(명칭)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	
	전화번호			
자동차등 소유주 (신청인과 다른 경우)	성명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	
	전화번호			
음주운전 방지장치	등록번호	말소사유 발생일(장치사용 중단일)		
등록 말소 사유	☐ 부착기간 경과로 제작·공급자 또는 설치업자에게 제거 후 반납			
	☐ 사용의사 없음으로 중도사용 포기			
	☐ 자동차등의 사고·화재·매몰·침수 등으로 장치가 멸실되고, 수리불가하여 신규기기로 교체 후 재설치			
	☐ 자동차등 도난으로 인한 장치 분실			
	☐ 장치분실(음주측정부)로 인한 신규 교체(기기번호 변경)			
등록 말소 통보서	☐ 발급 필요 ☐ 발급 불필요			

「도로교통법」 제5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도로교통공단 귀중

신청인 제출서류	-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업체에게 장치를 반납한 경우 -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업체에서 발행한 장치 반품(반납)확인서 1부(부착기간 2년 경과 등) - 사용자 중도 사용포기의 경우 - 장치사용자 중도 사용포기 사유가 포함된 자유기술서(일자, 성명, 서명 포함) - 자동차등 폐차로 인한 장치 동반멸실의 경우 - 자동차등 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- 자동차등 도난 등으로 인한 장치 분실의 경우 -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자동차등 도난신고확인서 1부 - 부착 자동차등의 교통사고·화재·매몰·침수 등으로 인한 장치기능 회복불가로 폐기하는 경우 - 경찰서장, 소방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이 발행한 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설치업체의 장치 재사용(AS)불가확인서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